

영통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함)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부적격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한국감정원(www.applyhome.co.kr) 인터넷청약 접수 및 등·호수 배정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신청자가 안내문의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신청자격'을 충분히 안내, 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609-7번지(망포5지구)
-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최고 27층, 7개동 총 653세대
- 기관추천 대상 세대수 : 장애인 11세대(예비5세대)

구 분	주택형(㎡)	59A	59B	75A	계
장애인	배정세대	7	2	2	11
	예비	3	1	1	5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함

※ 당첨자 선정방법은 해당기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결정하며 대상자 추천 시 청약주택형 필히 선택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음

2.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내용
1회 한정/자격요건/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각각 신청하여 중복 당첨될 경우에는 모두 부적격 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됨.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국가 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의 경우 입주자저축 요건 의무 없음. (중소기업근로자, 장기복무군인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어야 함) 									
	종류		추천기관		통장 사용	특공 1회 제한	유족 신청 가능	공공 임대 주택	국민 주택	민영 주택
	국가 유공자 등	1.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처(경기남부보훈지청)		X	○	○		○	○
		2. 보훈대상자			X	○	○		○	○
		3. 5.18유공자			X	○	○		○	○
		4. 특수임무유공자			X	○	○		○	○
		5. 참전유공자			X	○			○	○
	장기복무제대군인				○	○			○	○
	10년 이상복무군인		국군복지단(복지사업운영과)		○	○			○	○
	장애인		경기도(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X	○			○	○
			서울시(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시(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중소기업근로자		경기지방 중소기업청		○	○			○	○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당첨자 선정 방법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신청주택형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단, 국가유공자등, 장애인 제외))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청약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해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기관추천)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당사에 통보한 자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일정

구분	일자		참고사항
입주자모집공고일	2020.03.12.(예정)		건본주택 및 당사 홈페이지
건본주택 개관	2020.03.13.(예정)		당사 건본주택: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84-1
특별공급 접수일자	인터넷 청약	2020.03.23.(예정) 08시 ~ 17시30분	한국감정원 청약홈 인터넷청약 (http://www.applyhome.co.kr) ※국민은행 가입자 포함
	건본주택 방문청약	2020.03.23.(예정) 10시 ~ 14시	
당첨자 및 동·호수 발표	2020.04.01.(예정)		한국감정원 청약홈 인터넷청약 (http://www.applyhome.co.kr)
계약 기간	2020.04.13. ~ 2020.04.16.(예정)		당사 건본주택: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584-1
※ 2018.5.4. 개정 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한국감정원(http://www.applyhome.co.kr)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 (10:00~14:00)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접수시에는 특별공급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서류 별도 문의) ※ 신청일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 불가			

4. 기타 사항

- 공급금액, 전매제한기간, 재당첨제한기간,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및 유의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3.12.예정)을 확인하시어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형별 세부사항 등은 건본주택 및 영통자이 홈페이지 (<https://www.youngt-xi.co.kr>)를 통하여 다시 한번 반드시 확인 후 선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에 최종 통지된 대상자는 통지 시 기재된 주택형으로 금융결제원에 신청내역을 등록함에 따라 청약자 임의로 주택형 변경 등 추천내역과 상이하게 청약접수가 불가합니다.
- 기관추천 기준에 따른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주체에 통지된 대상자만 특별공급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접수 마감시간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 접수 중이라도 접수가 종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체결 전 서류확인 및 관계기관의 전산검색을 통해 수원시 거주요건, 과거당첨사실, 주택소유사실 등 입주대상자 및 세대원의 자격확인을 통해 부적격 사항 확인 시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는 당첨이 확정(경쟁시 탈락할 수 있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신청자는 타 특별공급(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모두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일정 및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를 위한 예정사항으로 향후 모집공고승인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 위치 및 건본주택 위치도

현장위치	건본주택 약도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건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포동 584-1</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size: 24px; font-weight: bold;">1661-7658</p>

[붙임 2]

영통자이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배정내역(추천양식)

주택형	구분	유형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59A	확정	장애인	홍길동	550505-1234567	010-5678-5678
59B	확정	장애인	XXX		
75A	예비	장애인	XXX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및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소수점이하는 절상한다.)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 예비자 추천세대 여부는 기관이 정하고 예비자 추천 시 별도 순번은 부여하지 않습니다.
- ※ 각 주택형별 배정 세대수에 맞게 추천인 명단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예비추천인 명단도 동시에 추천 바랍니다. (예비추천인 명단 배정 시)
- ※ **2020.03.18. (수) 12시**까지 기관추천 대상자의 명단 회신을 요청드리며, 기간 내 미통보시 특별공급 대상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할 예정이오니 특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사업주체에서 추천대상자 명단을 금융결제원에 등록(미등록시 청약불가) 마감시간을 준수해야 하는 관계로 회신 요청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